

충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60
----------	------

제출년월일 : 2010. 06. .

제 출 자 : 충 주 시 장

1. 제안이유

「식품위생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의 전부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우리시의 여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함

- 충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 충주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나. 법률 개정에 따른 법조문 변경 및 본문 약칭 내용 삭제함 (제1조)

-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 식품위생법 제89조

다. 용어 정의조항 중 법률에 정의된 사항 일부 삭제함(제2조제1호 및 제2호)

- 식품위생법 제2조, 제47조에서 정하는 사항

라. 기금의 조성 및 기금의 용도는 법률에 규정하고 있기에 삭제 함(제3조, 제4조)

- 식품위생법 제89조에서 정하는 사항

마. 충주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기능 추가함(제7조)

-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 ④ 경관협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1. 건축물의 의장·색채 및 옥외광고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2. 공작물(「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축조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건축설비의 위치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외부공간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5. 역사·문화경관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2조 (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경관협정서 작성 등의 자문 등 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경관위원회의 설치) ①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둔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 제116조의2 (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충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충주시 식품진흥기금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1조의 규정에 의거”를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로 하고 “충주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충주시식품진흥기금”이라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 되는 자금을 말한다.
2. “대여”란 시장이 금융기관에 충주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3항 중 “기금업무담당국장”을 “기금업무담당과장”으로 “위생 업무담당”을 “기금업무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3항 중 “기금업무담당국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7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제9조 중 “법 제71조제3항제1호”를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10조 중 “영 제7조”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p>(생 략)</p> <p>③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u>기금업무담당국장을</u> 기금 운용관으로 하고 <u>위생업무담당</u> 을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p> <p>④ (생 략)</p> <p>⑤ 조성된 기금이 5,000만원에 도달하거나 이자수입이 연 300 만원이상 발생될 시에는 의년도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4조 제1호의 용자사업은 기금 조성액이 용자사업에 적절하다고 판단될 시에 시행한다.</p>	<p>(현행과 같음)</p> <p>③ ----- -- <u>기금업무담당과장</u>----- ----- <u>기금업무담당</u>-----</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삭 제></p>
<p>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 ~ ②</p> <p>(생 략)</p> <p>③ 위원장은 충주시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u>기금업무담당국장</u>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p> <p>1. ~ 3. (생 략)</p> <p>④ (생 략)</p>	<p>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 ~ ②</p> <p>(현행과 같음)</p> <p>③ ----- -- <u>보건소장</u>-----</p> <p>1. ~ 3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2. (생 략)</p> <p><신 설></p> <p>3. 용자대상자선정</p> <p>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p>	<p>제7조(위원회의 기능)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기금운용의 성과분석</u></p> <p>4. (현행 제3호와 같음)</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u>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u></p>	
<p><u>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u> <u>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u> <u>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u> 	<p><u><삭 제></u></p>
<p><u>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u> <u>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조사·연구사업</u> <u>3.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u> <u>4.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u> <u>5.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시민신고보상</u> <u>6.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u> <u>7.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u> <u>8.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u> 	<p><u><삭 제></u></p>
<p><u>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②</u></p>	<p><u>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②</u></p>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식품위생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u>충주시식품진흥기금</u>(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식품위생법</u> 제89조에 따라----- ----- ----- ----- ----- ----- <u>충주시식품진흥기금</u> -----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대여”라 함은 시장이 융자에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2. “대여”란 시장이 금융기관에 충주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계정을 설치할 은행을 지정하고, 지정한 은행에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를하도록 하는 경우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1. 식품의 안전성과 식품산업진흥에 대한 조사·연구사업
 2. 식품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3. 식중독 예방과 원인 조사, 위생관리 및 식중독 관련 홍보사업
 4. 식품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5. 식품위생과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전산화사업
 6. 식품산업진흥사업
 7. 시·도지사가 식품위생과 주민 영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연구를 위탁한 사업
 8.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활동에 대한 지원
 9. 제18조제5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
 10.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식품질감시의 위탁검사를 위한 식품위생감사관의 감사실 설치 지원
 11.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우수업소와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12. 법 제48조제1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13.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율지도원의 활동 지원
 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제6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 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1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운영
 1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의 개수·보수에 대한 융자사업
 1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비용 보조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2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사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해당 사업의 추진현황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 제62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④ 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61조(기금사업) ① 법 제89조제3항제8호에 따라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